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

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. 이번 개정은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'구역압력조정기'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이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(www.kmcca.or.kr) 공개자료실에 있다.[편집자 주]

1. 지식경제부령 제210호(공포일 2011.11.4)

2. 개정 주요 내용

• 구역정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

도시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 시 투장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함으로써 구역정압기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함

개정 전	개정 후
<신설>	<p>별표 6 제3호가목1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) 가스설비기준</p> <p>가)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. 다만,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.</p> <p>①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</p> <p>②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</p> <p>나) 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정기(이하 “구역압력조정기”라 한다)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</p> <p>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</p> <p>②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</p> <p>③ 구역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, 그 구역압력조정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</p> <p>④ 구역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 발생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된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안에 설치할 것</p> <p>⑤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</p> <p>⑥ 도시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단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,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</p> <p>⑦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, 차량의 충돌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</p> <p>⑧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,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경계표지와 자물쇠장치를 할 것</p> <p>⑨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작동상태를 점검하며,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</p>

• 구역정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

도시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 시 투장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함으로써 구역정압기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함

개정 전	개정 후
<p>별표7제1호가목1)나)</p> <p>가스계량기는(30m³/hr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)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.6m이상 2m이내에 수직·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·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. 다만 <u>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</u></p>	<p>별표7제1호가목1)나)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<u>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와 기계실 및 보일러실(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)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</u></p>